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정책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자치단체 노동감독관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2명(7급 2명)”을 “5명(5급 1명, 7급 4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54”를 “659”로, 일반직 계 “647”을 “652”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2”를 “53”으로,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상담주사 · 공업
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8”을 “4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6”을 “664”로, 일반직 계 “649”를 “657”로,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2”를 “54”로,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상담주사 · 공업주
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8”을 “42”로, 행정주사보 · 통
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1”을 “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9년 7월 20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4</u>	<u>659</u>	+5
·	·	·	
·	·	·	
일반직 계	<u>647</u>	<u>652</u>	+5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u>52</u>	<u>53</u>	+1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 상담주사·공업주사·보 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8</u>	<u>42</u>	+4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6</u>	<u>664</u>	+8
·	·	·	
·	·	·	
일반직 계	<u>649</u>	<u>657</u>	+8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u>52</u>	<u>54</u>	+2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 상담주사·공업주사·보 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8</u>	<u>42</u>	+4
·	·	·	
·	·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1</u>	<u>43</u>	+2
·	·	·	
·	·	·	